

세계각국의 반론권법제현황

한병구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반론 내지는 정정보도청구의 권리인정은 오랜 역사와 함께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 인정의 개념은 일찍부터 언론의 자유보장이란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민 개개인의 인권도 중요하다. 이른바 인권보호사상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매스·컴의 대중파급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입법으로든 혹은 자율적인 기구를 통한 규제방법으로든 이들 반론·정정의 권리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 것 같다. 그러나 이들 권리를 남용함으로써 혹시나 언론자유의 근본정신을 흐리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반론권의 입법정신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다.

1. 머리말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가 다른 모든 자유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의 철칙과 같은 관례로 되어 있다. 그 까닭은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체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절대불가결의 요소가 되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언론이 그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때로는 오보나 오해에 의해서 개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는 등 시민 개개인의 인격적 권익을 침해함으로써 매스·미디어측의 언론의 자유와 시민측의 반론의 자유와의 사이에 긴장관계와 함께 충돌이 있어오고 있음은 조화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양자간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할¹⁾ 많은 나라에 서는 실정적으로 언론에 의한 명예나 신용훼손 등 인격적 권익침해에 대해 고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실정법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언론기본법²⁾ 같은 특별법을 마련해서 오보나 오해에 의한 보도의 이해관계자가 미디어에 대해 정정문이나 반론문의 게재를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또한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비록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바른 형태의 규정을 두어서 법률과 동일한 권한이 행사되어지는 나라도 있다. 이와 같은 권리인정의 양태와 관련해서 맥브라이드 보고서(McBride Report)는 그 유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영국이나 스웨덴같은 일부 국가에서 직업적 행동규약(The Codes of Professional Conduct)속에 이들 권리행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적용이 신문평의회(The Press Council)에 의해 감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들 권리를 법률로 명문화하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그 대신미디어가 자발적으로 시정할 것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몇몇 나라에서는 반론권(right of reply)은 누구에게나 부여하되 정정권(right of correction)만은 당국의 권한 소관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나라에서는 반론권과 정정권이 신문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던 것을 지금까지의 경험(유고, 서독, 프랑스, 스웨덴, 기타 많은 나라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권리가 방송에 적용되어 남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신문과 마찬가지로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경우에도 반론권을 조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³⁾ 다만 이들 권리를 반론권으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정정권으로 표현하느냐에 대해서는 나라에 따라 그 표현을 발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반론권으로 표현하든 정정권으로 표현하든 용어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다. 굳이 고전적인 개념에서 그 차이를 찾아본다면 정정권은 부실기재의 정정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협의의 정정권으로 해석 할 수 있겠고, 반론권은 이에 덧붙여서 이해관계자 스스로가 집필한 반론문의 게재도 요구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겠다. 후자의 경우는 전자와는 달리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 신문 등에 게재된 원문기사의 부실기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사실에 관한 착오의 변란논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문 등에 게재된 의견이나 논평에 대해서까지도 반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반론권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다.⁴⁾ 따라서 오늘날 몇몇 나라에서 채용하고 있는 정정권의 개념은 광의로 해석해서 반론권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기본법 제 49 조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정권의 입법취지에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권의 유형에 속한다」⁵⁾라고 밝힘으로써 반론권과 동일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이들 권리인정의 입법현황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롯해 국제적 차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몇몇 대표적인 나라들의 입법사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각국의 현황

(1) 한국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정정권을 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즉 1907년 7월 24일 통감부가법률 제 1호로 공포한 소위 광무신문지법(전문 41조) 제 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⁶⁾

「기사에 관하여 관계자가 정오를 청구하거나 혹은 정오서 역은 변박서의 게재를 청구할 때는 차회에 발행하는 지상에 게재하여야 한다. 정오서 역은 변박서의 자수가 원기사의 자수의 두 배를 초과할 예는 그 초과 자수에 대하여 보통광고료와 동일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정오 혹은 변박의 취지 혹은 사구가 본법으로 기재를 금한 자 혹은 요구자의 성명거주를 명시치 아니한 자의 요구는 응치 않을 수 있다. 」

이 광무신문지법은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의 체결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본의 내정간섭이 점차 확대되어 가던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해 볼 적 당시 일본의 신문지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그러한 근거로서 명치 6년(서기 1873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일본의 신문지법 제 17 조는 「신문지에 게재하는 사항의 착오에 대해서 그 사항에 관한 본인 또는 직접관계자가 정오 혹은 정오서, 변박서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⁷⁾라는 규정이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정정권과 관련하여 광무신문지법 제 20 조와 일본의 명치 6년 신문지법 제 17 조를 비교해 보면 한가지 점에서 크게 상이함을 엿볼 수 있다. 즉일본의 신문지법에서는 「사항의 착오에 대해서」를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서 광무신문지법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광무신문지법이 일본의 신문지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비록 광무신문지법에서 이 사항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 취지에는 다를 바가 없으리라고 본다. 그런 뜻에서 동법에 명시된 정오서 혹은 변박서의 청구도 단순히 「사항의 착오」, 즉 기사의 오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당시의 입법 취지를 통상정오권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협의의 정정권과 동의어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어 왔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권리인정은 그 후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매우 활발하게 논의된 것으로 보여진다.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 1535호로 제정된 방송법 제 3장 (방송국의 준수사항) 제 12조(정정방송) ①②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⁸⁾

①항 「방송국은 방송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나 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그 방송이 있는 후 7일 이내에 정정방송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진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방송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판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방송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시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

②항 「방송국이 그가 방송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발견한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이 법률의 경우 초안자가 법제정의 취지를 어디 (협의 내지는 광의의 정정권)에 두었던 법률자체로 보아서는 광의의 정정권 인정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동조 ①항에서는 「막연하게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되어있어서 이 경우 권리침해는

오보뿐만 아니라 의견이나 논평에 의해서도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정정권의 인정을 세심하고도 강력하게 표현한 법은 방송법이 제정된 다음해인 1964년 8월 5일 법률 제 1652호로 공포된 언론윤리위원회법이다. 이 법의 구상은 이미 군정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나 당시 신문발행인이나 편집인들이 자율적인 규제를 할테니 입법화만은 보류해달라는 간청에 의해 미루어왔던 법이기도 하다. 속칭 언론도살법이라고까지 불리웠던 이 법은 8월 2일 야간국회에서 통과를 보았고 사흘후인 5일 정부는 끝내 이 법을 공포(시행은 보류)하였던 것이다. 전문 20조로 되어 있는 이 법에서 특히 정정권과 관련된 조항은 12, 13, 14조⁹⁾이다. 제 12조①항에서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에 의하여 부당한 침해를 입은 자는……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을 기사의 오보뿐만 아니라 광의의 정정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제 13조③항에서는 「심의회는 기사 또는 방송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심히 과장된 것으로……인정된 때에는 이에 대한 해명 정정·사과의 기사 또는 방송할 것을 판정하여 지시한다」라고 규정한 바, 이 경우 비록 피해자로부터 정정청구가 없어도 심의회에서 판정하여 지시할 수 있도록 심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는 데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방송법은 정정권에 대한 어떠한 사례도 남기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일관해 왔고, 또한 언론윤리위원회법은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이 보류돼 오다가 결국 제 5공화국의 언론기본법제정과 함께 소멸되고 말았다.

(2) 국제적 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불안정한 세계에서 그릇된 보도는 사회적 격동을 조성하거나 부채질하며 심지어 관계국 대한 타국의 신뢰도를 파괴하는 등 불안을 낳게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그릇된 보도나 왜곡된 보도는 여러 나라에 상당한 손실을 입힐 수 있으며, 다양한 정치 경제세력에도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현실과 관련해서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간에 허위 또는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정정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므로 유엔총회는 1952년에 소위 「국제정정권에 관한 협약」¹⁰⁾(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Right of Correction)을 채택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요컨대 외국에서 발표된 보도로서 자국과 타국과의 관계, 혹은 자국의 척신이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허위 또는 왜곡이 행하여졌을 때 그 보도기관에 자국의 사실증명서를 첨부해서 정정발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유엔에서의 국제정정권협약은 협의의 정정권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근거로서 동협약 제 2조①항에서는 「..허위 또는 왜곡된 보도라고 주장할 경우에 한해서……」라고 하였고. 그리고 그 ②항에서는 「……논평 또는 의견의 표시를 수단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한 점으로 미루어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이 협약은 그 후 1962년 8월부터 발효되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협약을 비준한 체약국이 손꼽을 정도로 불과하여 사실상 이 협약은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이 협약의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아카데미하며 또한 비현실적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또

다른 하나의 동향은 1969년 11월 22일 코스타리카의 만호세에서 채택되어 1979년부터 발효를 보게 된 「미주인권규약」 중 제 14 조에서 볼 수 있다. 제 14 조(반론의 권리) ①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¹¹⁾ 『법적으로 규제되는 커뮤니케이션매체가 일반공중에게 전달한 부정확 또는 공격적인 보도 내지는 사상에 의해서 손상된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정해진 조건하에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사용해서 반론 또는 정정을 행할 권리를 향유한다』 이 조항에서는 반론권과 정정권을 함께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색이다. 아마도 국제적인 규약 중에서 명확한 형태로서의 반론권규정이 명시된 것으로는 가감 먼저 채용된 예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 밖에도 반론권의 제정문제는 유엔의 산하기관인 유네스코에서도 논의되었다. 1978년의 맥브라이드 위원회 중간보고서는 「저널리스트의 보호에 관한 초안」 조항중의 실시조치규정에서 「반론권의 제정」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한다.¹²⁾ 그러나 최종보고서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신 권고사항으로서 「부정확하거나 악의적인 국제적 뉴스보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기 위해 반론과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보아 더 강구되어야 한다」¹³⁾라고 권고하였다. 이와 같이 규약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끝나게 되는데 대해서 동보고는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그 개념의 성격과 범위가 너무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국가적인 규약을 채택하자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으며 현실성도 없다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다.¹⁴⁾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무대에서 반론·정정권 문제는 특히 제 3 세계 국가들에 의해서 거세게 주장되어 오고 있다. 표수에서 우세한 제 3 세계 국가들로서는 1952년의 「국제정정권에 관한 협약」과 같은 거추장스러운 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서 이같은 권리의 인정을 주장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보인다.

(3) 프랑스

세계최초의 반론권(droit de reponse) 규정은 프랑스가 1822년 3월 25일에 제정한 출판법에서이다. 프랑스가 이처럼 일찍부터 반론권을 인정하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1822년 당시 프랑스의 상황은 1789년의 프랑스혁명으로부터 나폴레옹 시대가 끝나고 부르봉 왕조(루이 18세)가 복귀해서 1814년 흥정헌법을 공포한 때부터 몇 년 후의 시기에 해당한다. 동헌법은 그 전문에서 「짐은 자유사상에 기초하고 또한 짐의 주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의하여 이 헌법을 프랑스국민에게 준다」¹⁵⁾라고 밝힘으로써 종래와는 달리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라는 혜택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로써 신문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 프랑스는 당시 소위 군소신문의 난립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마치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거 장면정권하의 신문계 현상과도 비교될만하다. 군소신문이 난립하면서 프랑스에서는 국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간에도 편집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던 것 같다. 따라서 당시의 반론권은 군소신문난립시대에 있어서 편집자를 골려줌으로 해서 그들의 입을 틀어막아 보자는데 그 저의가 있었던 것으로 엄밀한 뜻에서 오늘날의 반론권 개념하고는 그 뜻을 달리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 저의야 어떻든 1822년의 출판법 제 11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¹⁶⁾

「모든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소유자 또는 편집자는 반론의 수리로부터 3일 이내에 또는 3일 이내에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그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서 지명 또는 지시된 모든 사람의 반론을 게재하지 않으려 안된다. 이에 위반시에는 다른 벌칙에 구애됨이 없이, 또한 고발된 기사가 그자에게 주어지는 손해배상에 관계없이 50 프랑에서 5백 프랑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 게재는 무료이며, 반론은 원문기사의 두 배로 행할 수 있다」

동법 제 11 조는 그 후 1881년에 수정을 보면서 제 13 조로 옮겨졌고 동시에 제 13 조와는 별도로 제 12 조에 「공권의 受託者인 공무원의 정정권」에 관해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동규정은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의해서 부정확하게 보도된 공무원의 행위에 관해 동공무원의 정정요구를 인정하였다. 또한 수정된 출판법 제 13 조는 반론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첫째 일간·비일간의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한정되며, 둘째 지명 또는 지시된 자의 두 요건만을 인정할 뿐이다. 즉 공표수단의 성격에 관해서는 일간·비일간의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한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의 공적 성격을 지닌 이른바, 관보·판례집·국회 및 지방의회의 의사록 등은 반론권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다음에 반론권은 「지명 또는 지시된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데 지시란 성명이 꼭 명기되어야 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라는 것이 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개인이건 사회·조합·협회기타의 법인이건 권리주체로서의 구별은 없다. 동명이인인 경우라 할지라도 독자의 눈에 틀림없이 반론권을 주장하는 당해인이 원문기사에서 지명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신문이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반론권의 행사가 인정된다.¹⁷⁾ 이 밖에도 동법 13 조는 선거기간중의 반론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신문의 발행책임자는 선거기간의 개시와 함께 신문의 발행시간을 검찰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반론문의 게재기간 및 게재거부에 관한 법원의 소환기한은 일간신문의 경우 24시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반론강제의 판결 후 24시간 이내에 반론문이 게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책임자는 징역 및 벌금에 처해진다.¹⁸⁾ 프랑스에서 방송미디어에 반론권 규정이 도입된 것은 1972년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1881년 출판법 제 29 조에서 방송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을 경우에는 그 방송국의 제작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정도로 명시되어 있어서 사실상 반론방송은 인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겠다. 1972년의 방송법 제 8 조는 반론권에 관해서 「자연인의 명예, 명성 또는 제이익에 공격을 가하는 비난이 방송되었을 경우에 관해서 법령은 반론권을 구성하는 제요건을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1975년 5월 13일 방송에 있어서 반론권의 조직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반론방송청구의 구성요건을 규정함과 동시에 ① 전국반론권위원회의 설치, ② 반론청구에 관한 수속절차, 그리고 ③ 전국반론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최고행정재판소(Conseil d'Etat)에 월권소송의 길을 터놓았다는 점에서 그 특색을 엿볼 수 있다. 전국반론권위원회에 관해서는 동법령의 제 6 조 이하에서 그 구성·임기·임무 등에 최고행정재판소에서 2명, 파행원에서 2명, 그리고 시청각고등평의회에서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년의 임기로 수상에 의해 임명된다. 반론청구의 수속절차에

관해서는 우선 반론방송의 청구권자가 그 취지를 각 프로그램협회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송된 일시, 신청인의 명예·명성 또는 제이익에 공격을 가하는 비난 및 신청인이 행하려고 하는 반론의 제사항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신청을 각 프로그램협회의 장이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같은 신청상황 하에서 반론방송이 행해지게 된다. 거부되었을 경우 청구권자는 전국반론권위원회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수리한 위원회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해서 결정하고 또한 필요시에는 방송 되어야 할 반론의 내용·형식에 관해서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결정하에 각 프로그램협회의 장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요건에 따라 반론방송을 행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의무위반시에는 1 천 프랑에서 2 천 프랑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각 프로그램협회의장 및 전국반론권위원회에의 신청기간은 1 주일이며 전국반론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해서 월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72 년의 방송법 제 8 조 및 1975 년의 법령이 규정한 반론권의 요건은 1881 년의 출판법 제 13 조와 비교해서 한정적이라는 것이 특색이다. 즉 출판법에서는 그 청구자의 요건으로서 자연인과법인의 양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방송법과법령에서는 자연인에만 한정시키고 있다. 1975 년의 법령이 공포된 이래 근 2 년 동안 국영프로그램협회의 하나인 제 1 텔레비전(TFI)에 대해서 행하여진 반론권 행사의 신청건수는 모두 23 건으로 집계되었는데 그 중 1 건은 제 1 텔레비전의 장에 의해서, 3 건은 전국반론권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반론권의 행사가 인정되었다. 기타 19 건은 각하되었으며 그 중 1 건은 최고 행정재판소에 제소되었다. 각하의 주된 이유로서는 ① 대부분의 신청은 기간 후에 행하여졌으며, ② 많은 신청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등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¹⁹⁾

(4) 서독

독일에서 처음으로 반론권(Gegeudars tellungsrecht)을 규정한 법은 1874 년 5 월 7 일의 출판법 제 11 조로서²⁰⁾ 그 모체는 1822 년 프랑스의 출판법이 출판보도에 의해 명예를 침해받은 자에게 법적인 정정청구권을 인정한 데서 비롯된 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언론기본법 제 49 조(정정보도청구권)가 독일출판법 제 11 조를 모델로 원용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동법 제 11 조는 반론권에 관해서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기관 또는 사인에 관한 사실이 보도된 경우 이해관계자는 책임 편집자에 대해서 정정(Berichtigung)을 요구할 수 있다. 정정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지니지 않으며 사실의 신청에 한정된다. 정정은 일정한 요건하에 무료로 행하여 진다」²¹⁾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독은 처음에는 정정의 개념을 사용했으나 1950 년대 전반까지 거의 모든 주출판법 또는 방송법이 개정 내지는 새로이 제정되면서 반론의 개념이 채용되었다. 그 까닭은 오늘날 반론이 그 내용에 관해서 진실성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충족된다면 게재되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반론권의 그와 같은 성격에 적절한 용어로서 반론의 개념이 채용된 것이라 하겠다. 반론권의 내용에 대해서 서독은 현재 각 주 출판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바이에른, 베를린 헨쑤주 출판법에서는 제 10 조, 그리고 바덴·

뷔르템베르크주를 비롯한 기타주의 출판법에서는 제 11 조). 이들 주의 규정에 의하면
반론권의 으뜸가는 특징은 실적 내용에 대한 사실적 반론은 인정하지만 가치판단을 내포한
의견이나 논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공통되어 있다.²²⁾ 이러한 요건은 한편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혹은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대립적인 법익을 고려해서 그것과의
조화를 염두에 둔 요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두 번째의 특징으로서 반론권은 매스 ·
미디어의 보도와 상이한 사실적 내용을 일방적 반론으로서 매스 · 미디어에 게재시킬 수
있을 뿐이며 보도내용을 철회시키거나 정정시키거나 하는 등의 권한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론권은 의회 및 재판의 사실보도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²³⁾ 이와 같은 공통된 특징과는 달리 각주의 출판법은 세부적인 면, 즉 영업광고에
대한 반론권의 취급방법이라든가, 반론권의 무료게재의 범위, 또는 반론의 기한 등에 대해서
다소의 상이점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서독의 신문평의회는 이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고
하나의 통일된 원칙을 확립해 보고자 1972 년의 정례회의에서 「반론권의 취급에 관한
원칙」을 결정해서 각 관계기관에 송부한 바도 있다.²⁴⁾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 규정은
서독의 경우연방법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해외방송, 즉 도이취방송(DLF)과
도이취벨레(DW)를 제외하고는 서독연방공화국기본법 제 30 조와 제 70 조 1 항의 원칙에 따라
주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은 각주의 방송법 · 출판법 또는 공공시설에 관한
주간협정 등에 의해 규제된다. 방송의 반론권 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규정을 보면
제 2 도이취텔레비전(ZDF)의 경우 「제 2 도이취텔레비전방송협회에 관한
주간협정」 제 4 조는 「반론권은 직접 이해관계자 또는 기관에 귀속되며, 반론은 사실의
주장에 한정된다. 반론은 서식과 서명을 필요로 하며 처벌의대상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반론은 원인이 된 방송의 길이를 넘을 수 없으며,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이로 어떠한
삽입 또는 생략없이 방송되어야 한다. 또한 반론청구는 그 실현을 위해 법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제 2 도이취텔레비전의 이 규정은 내용적으로는 거의
도이취방송과 바이에른방송(BR)의 반론권규정과 일치하고 있으나 반론청구의 법원에 의한
강제방법이 다소 불명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송법에 있어서 반론권 규정의 모범이
되어지고 있다. 도이취방송의 규정은 제 2 도이취텔레비전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해서 법원에
의한 민사상의 가치분수속을 정함으로써 반론강제의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도이취방송법 제 25 조는 「청구권은 통상 법원에서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가치분의
방법으로 의무자가 반론을 방송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치분명령 때문에 청구권의 위태화에
관하여는 소명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헛썸방송에 있어서는 반론권의
근거로서 방송법 제 3 조 8, 9 항과 주출판법 제 10 조가 대상하여 진실이 아닌 주장의
정정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법과 반론청구의 형식적 성격을 그 본질로하는 출판법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남도이취방송은 그 방송규약 제 2 조 4 항에서 정부 또는 대체로
정부와 같은 입장에서 비판되어지는 사람들과 관청 및 기관에 동등한 방송시간과 그에
상당한 방법으로 침해에 대해서 스스로를 지키고 또는 지켜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반론권에 관해서 그 이상의 구체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²⁵⁾

(5) 미국

미국은 프랑스나 서독과는 달리 인쇄미디어에 관한 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반론권규정이 없는 것이 특색이라면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언론으로부터 침해를 받은 사람은 서구처럼 법적규정에 의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법원에 제소하여 사소한 권리침해에도 막대한 액수의 배상금을 받아내고 있어서 언론이 피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반론권행사에 못지 않는 피해회복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옛날 프랑스적 식민지였던 플로리다주와 미시시피주에서만 주법으로 반론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의 1822년 출판법에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본다. 1913년에 제정된 플로리다주의 반론권규정은 제 104, 38 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²⁶⁾ 즉, 「어떠한 신문이라 할지라도 그 란에 있어서 지명후보자나 선거후보자의 인격을 공격하고, 또는 공직에 있어서의 부정행위 내지는 실당행위를 갖고 당해후보자를 고발하거나 후보자의 공직상의 혹은 이력을 공격하고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자유로운 지면을 제공할 경우 당해신문은 당해후보자의 청구에 의해 후보자가 그곳에 행한 반론을 반론의 원인이 된 기사만큼 눈에 의는 장소에 같은 활자크기로 즉시 무료로 공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 반론의 원인이 된 기사의 길이를 초과할 수는 없다.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또는 단체는 제 1급의 경죄로서 775 · 082 로 또는 775 · 083 조 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미시시피주의 반론권 규정 제 3175 조²⁷⁾도 플로리다주의 그것과 비교해서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양 주 모두가 공직후보자에 한해서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반론권 내용에 관해서도 정정 · 의견의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이 제정된 이래 한 두개의 사건이 있었을 뿐 그것조차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 1 조 및 제 14 조와 관련해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던 것이다. 미국은 인쇄미디어에 관한 한 국가적 차원에서 반론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법적 규제도 없다는 것은 상술한 바 있다. 그 대신 전국보도기관과 공중으로부터 대표자 15명으로 구성된 전국보도평의회(The National News Council)가 1973년 8월 1일 발족되면서 이 자율적인 기구에서 뉴스보도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발족이래 상당한 수의 불복을 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가 접수한 민원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는 자료미흡으로 거론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방송의 경우는 인쇄미디어의 경우와는 그 사정을 달리하고 있다. 말하자면 국가적 차원에서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1934년에 제정된 연방통신법(Federal Communication Act) 제 315 조는 공직에 출마한 어떤 후보자가 방송을 이용할 때 다른 입후보자도 방송을 이용할 같은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 조항²⁸⁾이 간접적으로 반론의 기회를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소위 「균등시간」(equal time) 조항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조항은 통신법이 제정된 1934년에 처음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고 1972년의 연방라디오법(Federal Radio Act) 제 18 조를 통신법에 옮겨온 조항이다. 직접적으로 반론권을 인정하게 된 시기는 1959년의 연방통신법개정에 따라 균등시간조항에 행정방침으로서 추진된 「공평의 원칙」(fairness doctrine)에서 엿볼 수 있다. 방송에 대한 규제권한의 집행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는 공평의 원칙의 내용으로서 공격 정치논설에 관한 규칙²⁹⁾을 다음과 같이 제정했다. 「① 공적으로

중요한 논쟁사항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는 동안 특정개인 또는 단체의 성실 · 성격 · 품위내지는 같은 개인적 자질에 공격이 가해했을 경우 피면허자는 1 주일 이내에 공격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 a. 그 방송의 일시 및 방송내용의 통지, b. 그 공격의 태본 또는 테이프(또는 태본 내지는 테이프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확한 요약)와 그리고 c. 피면허자의 시설에 의한 반론의 상당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에서 미국의 통신법에 규정된 반론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미국의 반론권규정과 서독의 그것을 비교해 볼 때 그 권리내용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첫째로 서독의 경우는 그 권리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매스 · 미디어에 의해서 그 이해를 침해당한 자는 당해미디어에 대해서 사실적 반론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미국통신법의 경우는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인정되고 있는 형태의 것으로 매스 · 미디어에 있어서 공적으로 중요한 논쟁적 문제에 관해 한쪽 편의 의견만이 개진되었을 경우 반대의견을 지닌 개인이나 그룹이 미디어에 대해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둘째로 서독의 경우는 반론강제의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는 강제성이 희박한 것 같다. 그 이유로서 「공평의 원칙」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정부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의 정책방침이지 그 자체가 통신법 제 315 조와 동등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법적 구속력의 결여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6) 영국³⁰⁾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반론권을 규정한 법률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명예훼손법 제 4 조가 내용적으로 각국의 반론권규정과 흡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 4 조는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말을 공표했을 경우라도, 고의성없이 공표한 것을 주장하게 되면 손해배상에 대신해서 「대상의 신청(an offer of amend)」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동조는 그 5 항에서 「① 이의의 대상이 된 말을 불복신청인과 관련지어서 특별히 공표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그 말이 불복신청인에게 향하여진 듯이 해석되는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것과 또는 ② 그 말은 문맥상 명예훼손적이 아니며 또한 발행자는 그 말이 불복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이 해석되는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것, 혹은 상기한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자가 공표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발행자는 대상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대상의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 3 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어떠한 경우에도 불복의 대상으로 된 말의 적절한 정정 및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사죄를 스스로 공표하고 또한 출판물에 연서로서 공표할 것, ② 만약 명예훼손적 말을 포함하는 문서 또는 기록의 사본이 발행자에 의해서 배포되고, 배포처를 알고 있을 경우는 발행자는 그 배포를 받은 자에 대해 그 말이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의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것을 통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가 이 신청을 승낙하고, 발행자가 바로 신청을 실행하게 되면 그 효과로서

명예훼손 소송은 제기되지 않으며 이미 제기되어 있을지라도 취하된다. 또한 피해자가 이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발행자가 선의무과실을 증명하거나 즉각 대상의 신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소송상 완전한 방어가 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 명예훼손적인 말의 필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이 발행자에게 다시 요구되고 있다」. 이 밖에도 대상의 신청제도와는 별도로 명예훼손법 제 7 조 2 항에 따라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신문의 면책특권과 관련해서 반론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즉, 신문은 일정한 경우에 면책특권을 가지지만 그 경우에도 피해자가 당해 공표가 악의로써 행하여졌다는 것 및 피해자로부터의 변명 또는 반론서를 신문이 같은 난에 게재할 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또는 부적합하게 공표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그 면책특권을 빼앗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명예훼손법 제 4 조와 제 7 조의 규정으로서도 내용상 반론규정으로서는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이용된 사례는 과거에 있어서 불과 한, 두번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영국은 현재 명예훼손법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검토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반론권 문제와 관련해서 영국에서는 법적 차원에서 보다는 자율적 기구를 통해 더욱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즉 신문평의회 산하에 있는 민원처리위원회(Complaints Committee)와 영국방송협회(BBC)산하에 있는 프로그램민원처리위원회(BBC Programmes Complaints Commission)가 각각 신문·방송에 대한 민원의 조정기관으로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신문의 경우 민원처리위원회는 그 규칙에서 사실에 관해서 오보가 행하여져서 피해자가 편집책임자에게 정정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자는 먼저 동위원회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동위원회는 당해 신문에 대해서 적절한 정정 및 사죄를 공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규칙은 방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부언하자면 이들 위원회가 신문이나 방송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면 비록 법적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 공표를 게을리하는 예가 별로 없다고 한다. 그러한 사회풍토가 새삼 부러울 따름이다.

3. 맺는 말

위에서 열거한 몇 개의 나라 이외에도 이태리의 경우는 1948년 2월 8일 법 제 8 조의 「반론과 정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으며 또한 방송에 관해서는 1975년 4월 14일 법 제 7 조에서 정정권이 인정되어 있다.³¹⁾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는 1883년의 형법에서 제정되어 1953년에 이 조항이 다시 부활되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기사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만화에서도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반론이 가능하며,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당해신문에 대해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²⁾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반론 내지는 정정보도청구의 권리인정은 오랜 역사와 함께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인정의 개념은 일찍부터 언론의 자유보장이란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민 개개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이른바 인권보호사상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마스크의 대중파급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입법으로든 혹은 자율적인 기구를 통한 규제방법으로든 이들 반론·정정의 권리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 것 같다. 그러나 이들 권리를 남용함으로써 혹시나 언론자유의 근본 정신을 흐리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반론권의 입법(규칙도 포함)정신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다는 것을 부언해 둔다

- 참고문헌 -

- 1) 헌법 제 20 조, 형법 제 307, 308, 309 조, 그리고 민법 제 750, 751, 764 조 참조.
- 2) 언론기본법 제 6 장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조항을 참조.
- 3) Sean McBride, Many Voices, One World (Paris' UNESCO, 1980), P. 248.
- 4) 尹藏正己편, 현대 손해배상법 강좌 2 (동경, 일본평론사, 1972), P. 268.
- 5) 언론기본법-제정의의와 특징(문공부 제공, 참고자료, 1980) P. 25.
- 6) 성준덕편, 한국신문사(신문학회, 1955), PP. 66-67.
- 7) 尹藏正己편, 전양서, P. 271.
- 8) 64 년도 신문연감, (한국신문연구소), PP. 332 - 333.
- 9) 제 12 조(심의판정요구) ①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에 의하여 부당한 침해를 입은 자는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의 내용이 윤리요강에 저촉되는 것을 이유로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심의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심의회란 언론윤리위원회를 말하며 9 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3 조(심의회의 판정 등) ③항. 심의회는 기사 또는 방송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심히 과장된 것으로서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한 것으로 윤리요강에 저촉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에 대한 해명, 정정, 사과외 기사 또는 방송을 할 것을 판정하여 지시한다. 제 14 조 (공표문의 게재 및 방송의무) ①항 모든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및 방송국의 장은 심의회가 윤리요강에 저촉되는 사항을 판정공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한 날로부터 2日 이내에 그 전문을 게재 또는 방송하여야 하며 휴간 또는 방송중지중인 경우에는 속간하거나, 방송을 재개하는 즉시로 이를 게재 또는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으로 발행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심의판정은 그 판정을 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 심의회가 결정하는 발행처에 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항. 전항의 게재 또는 방송방법에 관하여는 심의회가 판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제 2 조 ①항 청구 요건으로서, 「...체결국이 체결국 또는 비체결국의 특파원 또는 보도기관에 의하여 일국에서 타국에 방송되고, 외국에서 발표 또는 유포된 뉴스 통보에서 그 나라와 타국과의 관계, 혹은 이 나라의 위신 또는 존경을 손상하는 것 같은 것에 관하여, 허위 또는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 체약국은 이 같은 통보가 발표 또는 유포된 지역의 체결국에 대하여, 자국의 사실증명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 사실증명서의 사본은 당사자인 특파원 또는 보도기관으로 하여금 문제의 뉴스통보를 정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시에 당해 특파원 또는 보도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항. 사실증명서는 뉴스통보에 대해서만 이것을 매출할 수 있게 하고, 논평 또는 의경의 표시를 수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실증명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확 또는 왜곡됨을 정정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장문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 사실증명서는 발표 또는 유포된 통보의 전문을 첨부하고 또 이 통보가 특파원 또는 보도기관에 의하여 국외에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구의 수속절차로서는 제 3 조 ①항. 체약국은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된 사실증명서를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지체없이 또 어떤 경우라도 그날부터 제산하여 만 5 일 이내에, 문제의 사실에 관한 고견해외 여하를 불문하고, (1)국제문제에 관한 뉴스발표를 위하여 실례적으로 사용되는 경로를 통하여, 그 영토내에서 활동하는 각 특파원 및 보도기관에 대하여 사실 증명을 발표하여야 한다. 또 (2)만약 그 영토내에 문제된 통보발신책임자인 특파원이 소속하는 보도기관의 본사가 있을 경우에는 동본사에 대하여 사실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①항, 만약 제 2 조의 규정에 인한 사실증명서의 송연을 수취한 나라가 제 3 조에 구성된 의무를 소정기일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정정권행사체결국은 발표 또는 유포된 통보전문을 첨부하여 전기의 사실증명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그때 이 조치를 취한 것을 불평상대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 통고를 받은 나라는 통고를 받고 만 5 일 이내에 유엔사무총에 대하여 자국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그 의견서는 제 3 조에 인한 자국의 의무불이행의 편에 관한 것에 한한다.

②항, 사무총장은 여하한 경우라도 사실증명서를 수취한 후 만 10 일 이내에 자기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경로를 통하여, 그 사실증명서를 당해통보 및 불평상대국(만약 제출되어 있다면)의 의견서와 함께 적당히 주지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제적 정보교류의 자유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일본신문협회연구소, 1981년 3월 간, PP. 80~81

11) 상계서, p. 85.

12) 상계서, p. 34.

13) Sean McBride, 전계서, p. 263.

14) 상계서, p. 263

15) 강의무, 근대유럽정치사(동경 : 홍대당. 1957), P. 47.

16) 石村善治편, 開かれたとは何か, (동경 : 시사통신사, 1979) , p.53.

17) 正己편, 전계서, PP. 271-272

18) 石村善治편, 전계서, P. 54.

19) 상계서, PP. 83 - 92.

20) 제 11 조 (반론게재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의 책임편집인과 발행인은 그 인쇄물에 게재된 사실주장에 의해 피해받는 개인 또는 기관의 해명을 인쇄할 의무를 진다.

② 피해받은 개인 또는 기관이 공표에 관하여 하등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해명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오로지 영업적 거래만을 위한 광고인 경우에는 해명을 인쇄할 의무가 없다. 해명이 이익있는 본문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명은 사실적 진술에 국한되며 가벌적 내용을 가져서는 안된다. 그것은 서면형식에 의함을 요하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해명이 지체없이 늦어도 공표 후 3일 이내에 책임편집인 또는 발행인에게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그 인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해명은 그 제출의 수령직후 인계 완료되지 아니한 판에 이익있는 본문과 동일한 인쇄물부분에 동일한 문자로서 침삭함이 없이 인쇄되어야 한다. 그것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발간될 수 없다. 인에는 해명에 대하여 동일한 판에 언급하는 자는 사실의 진술에 국한하여야 한다.

④ 반론청구권의 집행을 위해서는 통상 재판권에 의한 구제가 주어진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책임편집인과 발행인이 제 3 항의 방법으로 해명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가치분명령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청구권의 위태화에 관하여는 소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본안절차는 행해지지 아니한다.

⑤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 또는 의결기관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판에 대한 진실에 충실한 보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언론기본법제정의의와 특징(문공부 제공, 참고자료. 1980). PP. 41-44.

21) 石村善治편, 전게서, p. 58.

22) 廣瀨英彦, 서독에서 보이는 반론권 특징(동경일본신문협회, 신문연구 1976년 2월호), p.69.

23) 상동

24) 상동

25) 石村善治편, 전게서, PP. 62-64

26) 상게서. PP. 73-74.

27) 「동주에 있어서 발행되고 판매되는 신문이 공직후보자의 성실, 품위, 인격을 비난하는 해설 또는 뉴스보도를 게재했을 경우 당해신문은 반론 수영후 지체없이 다음다음호에 그 반론을 게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송부된 반론은 변경될 수 없다. 반론은 가능한 한 원문기사와 같은 장소에, 같은 활자로, 또한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신문이 그 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임무를 지운다.」 石村善治편, 상게서, P. 81.

28) 이상희. 방송론-정치방송의 균형과 접근의 권리 (법문사 1982), p. 110.

29) 石村善治편, 전게서. PP 78-79.

30) 영국에서의 반론권제정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石村善治편, 전게서, PP. 68-73 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31) 石村善治편, 상계서, P 52.

32) 신문편집관계법제현구회편, 법과신문(동경 일본신문협회, 1972), P. 337.

- 경희대학교, 미조리대학교(신문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정치학 박사)

- 저술 : 「비교신문학」(공저), 「매스컴이론」(공역), 「매스컴과 사회」(공역) 외 다수

- 현재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